

회원 및 직원동정

■ 회원동정

신규회원(2004. 1~8월 현재)

- 이용선 : 씨이프넷 | 전문위원 | 건설안전기술사
- 배중형 : SK건설 과장 | 건설안전기술사
- 김상진 : (주)건화엔지니어링 부사장 | 건설안전기술사
- 이광희 : 한국선금 ENG 부장 | 건설안전기술사
- 장기정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과장 | 건설안전기술사
- 송재준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 교수 | 건설안전기술사
- 안무영 :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전문위원 | 건설안전기술사
- 김한용 : (주)한맥도시개발 부장 | 건설안전기술사
- 이상철 :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부장 | 건설안전기술사
- 김주생 : 두산산업개발(주) 차장 | 건설안전기술사
- 장덕배 : 쌍용건설 부장 | 건설안전기술사

■ 주소변경 및 연락처 변경

▶ 자택

- 이승우 : 서울시 금천구 시흥1동 493-2 5층 T. 02-802-5412
- 박희진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2번지 논현아파트 104-903
- 김성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536 탑마을  
선경아파트 116-201 T. 031-702-8964
- 정홍기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9 광장 11차 현대홈타운 1103-302
- 이상용 :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연남리 486 하마비마을  
동일하이빌 2차 아파트 212-1706
- 박정후 : 서울 송파구 방이동 215 코오롱아파트 102-705
- 박구병 :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39-2 영동스카이빌 101호
- 문장수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대우 3차 아파트 301-503
- 민윤식 :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상하리 630 강남마을  
한라비발디아파트 902-601 T. 02-285-9955
- 박주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파크뷰아파트 601-1004
- 유성진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107-801
- 유철호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아파트 23-506

- 정홍수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태영타운아파트 113-702 T. 02-868-7453
- 조선구 :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304 대방드림힐아파트 101-706
- 정재훈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신동아아파트 3-1508
- 김문훈 : 제주시 노형동 1274-9 신제주 빌리지 602호

▶ 승진 및 이직

- 고주환 : 롯데건설(주) 이사 → 롯데건설 상무이사(승진)
- 유성진 : 도우엔지니어즈 → 인본건설 사장(취임)
- 채태희 : 한국중공업 → 제일건설안전기술단 이사(이직)
- 김창수 : 국세청 → 월드건설(주) 부장(이직)
- 이상필 : 선원건설 → 일성건설 이사(이직)
- 이석영 : 한국산업안전건설팀 → 중앙건설(이직)
- 최세영 : 제미 → 원복토건 대표(취임)

■ 직원동정

▶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자

- 박대성 차장(광주지회) : 건설안전기술사 최종 합격
- 오형국 차장(건축부) : 건설안전기술사 1차 합격

▶ 신규채용

- 경기지회 기술지도부 사원 | 유혜남 (2004. 2. 2)
- 토목진단부대리 | 김영현 (2004. 2. 10)
- 서울지회 기술지도부 대리 | 박찬승 (2004. 2. 10)
- 광주지회 기술지도부 주임 | 김남철 (2004. 5. 27)
- 경인지회 기술지도부 부장 | 이상철 (2004. 7. 26)
- 건축진단부 전문위원 | 안무영 (2004. 8. 9)

▶ 퇴직자

- 건축진단부 전문위원 | 김태경 (2004. 2. 4)
- 광주지회 기술지도부 대리 | 문장식 (2004. 2. 20)
- 광주지회 기술지도부 과장 | 박광삼 (2004. 2. 18)
- 광주지회 대전사무소 과장 | 이병진 (2004. 2. 26)
- 토목진단부 기사 | 장진규 (2004. 3. 30)
- 토목진단부 대리 | 양정철 (2004. 4. 22)
- 건축진단부 차장 | 박기준 (2004. 5. 13)
- 전주사무소 주임 | 이을례 (2004. 7. 30)

## 협회 업무 소개

### ■ 안전진단

#### ▶ 안전점검

- 법적근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 대상: 동법 제2조에 의한 1,2층 시설물
  - 정기점검: 반기별 2회
  - 정밀점검: 2년 1회 이상(건축물 3년마다, 수중항만시설 4년마다)

#### ▶ 초기점검

- 법적근거: 영 제4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영 제46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
- 과업범위: -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 사항을 파악한다.
- 향후의 점검 · 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설정
-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 대형공사의 정기안전점검

- 법적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 대상: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의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주변안전조치의 적정성

#### ▶ 정밀안전진단

- 법적근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 대상: 공사완료 후 10년 이상 경과된 1층 시설물

정밀점검결과 정밀안전진단 판정시

리모델링 시행시 공사착수전 안전진단

노후화된 교량 및 터널, 항만, 수리시설의 안전진단

#### ▶ 재건축을 위한 노후 불량주택진단

- 법적근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동시행령 제42조의 2, 제44조 / 동시행규칙 제32조의 2
- 대상: 재건축을 위한 노후불량주택

#### ▶ 공동주택 하자진단

- 법적근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3 / 동시행규칙 제11조의 2
- 대상: 1,2층 시설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 기술지도부 업무 안내

#### ▶ 재해예방 기술지도

-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
  -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120억원 미만의 건축, 플랜트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
  -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15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

-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건설공사
- 전국 도·시·지방(단, 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 기술지도를 체결치 않은 대상사업장의 제재사항

1. 기술지도계약미 체결시: 안전관리비 20% 환수(법 30조 1항)
2. 기술지도계약 지연 체결시: 조정금액만큼 환수

3. 산안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사전입찰자격심사(P,Q)시 감점 : 최고 -3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1조

· 대 상 :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2)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3)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4) 터널공사

5) 다목적 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건설 등의 공사

· 벌 칙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미제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진단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 대 상 : 1) 중대재해사업장 2) 50m 이상 터널공사

3)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4) 200m 이상 교량공사

· 벌 칙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안전컨설팅

· 대 상 : 건설회사 전사업장

· 업무 내용 :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2) 현장의 안전관리 실시 3) 안전교육 실시

■ 교 육

· 종합안전관리 및 안전경영진단 본사 및 현장을 망라 무재해 도달을 위한 안전관리 대행 또는 지원·지도

- 안전관리체계 정립 위한 제반지원

- 안전교육 교재개발 또는 강사지원

· K-OHSMS 18001 인증 심사원 양성과정

- 인증심사원 시범연수기관으로 지정(2001. 6. 19)

-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지정

· 안전관리 전문가 과정 - 안전관리전문가 양성교육

회원가입안내

■ 회원가입 및 연회비 납부안내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기사, 산업기사 여러분의 회원가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진단 및 점검,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및 컨설팅, 건설안전교육 등으로 국내 최정상 건설종합안전전문기관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회원으로서 건설안전의 선두주자가 되십시오.

■ 가입안내

● 회비 : 입회비 100,000원, 연회비 50,000원, 종신회원 5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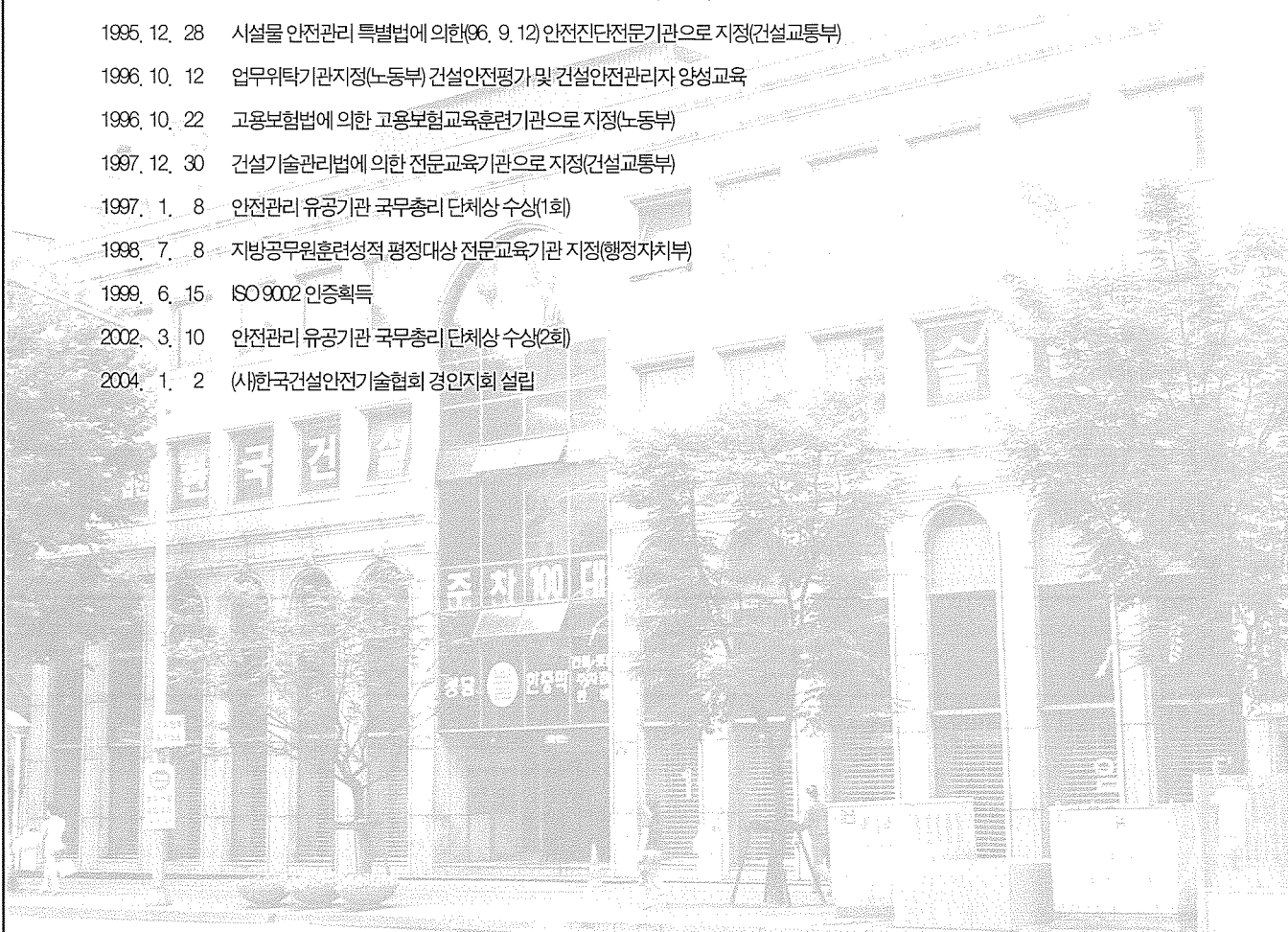
● 문의 : 회원실 TEL)02-3444-4570 FAX)02-3444-4855

● 온라인 : 하나은행 210-071537-01204, 예금주: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회비 미납 회원분들께서는 미납된 연회비를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회원 여러분의 자택 및 직장 주소, 연락처 변경사항과 기타 공지사항 등을 바로 알려 주시면 협회지 '협회 소식' 란에 게재하여 회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협회 변천사

- 1985. 6. 19 (사)한국기술사회 건설안전전문분회 창립
- 1986. 9. 11 건설안전진단기관 지정(노동부)
- 1989. 7. 7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설립(노동부)
- 1989. 8. 2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97. 7. 15) 건설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서울지방노동청)
- 1990. 12. 28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97. 7. 15) 건설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서울지방노동청)
- 1992. 1. 17 건설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보수교육기관 승인(서울지방노동청)
- 1994. 4. 7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건설교통부)
- 1994. 8. 16 주택건축촉진법에 의한 노후불량주택 진단기관으로 지정(건설교통부)
- 1994. 11. 2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하자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건설교통부)
- 1995. 3. 9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97. 7. 1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서울지방노동청)
- 1995. 7. 1 상하수도법에 의한 상하수도시설 기술진단기관으로 지정(환경부)
- 1995. 12. 28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96. 9. 12)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건설교통부)
- 1996. 10. 12 업무위탁기관지정(노동부) 건설안전평가 및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1996. 10. 22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노동부)
- 1997. 12. 30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건설교통부)
- 1997. 1. 8 안전관리 유공기관 국무총리 단체상 수상(1회)
- 1998. 7. 8 지방공무원훈련성적 평정대상 전문교육기관 지정(행정자치부)
- 1999. 6. 15 ISO 9002 인증획득
- 2002. 3. 10 안전관리 유공기관 국무총리 단체상 수상(2회)
- 2004. 1. 2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경인지회 설립



조직도



기술자격증 보유현황

구분	건설 안전 기술사	건축 시공 기술사	토목 시공 기술사	토질 및기초 기술사	건축 구조 기술사	토목 구조 기술사	건축사	공학 박사	건축품 질시험 기술사	건설 안전 기사	건축 기사	토목 기사	건설재료 시험 기사	계
기술 지도부	3	0	0	0	0	0	0	0	0	5	3	1	0	12
건축부	3	1	0	0	1	0	0	1	0	7	10	0	0	23
토목부	4	0	3	2	0	1	0	0	0	1	0	4	1	16
기획 (교육)	8	3	2	0	0	0	1	0	1	1	1	0	0	17
계	18	4	5	2	1	1	1	1	1	14	14	5	1	68